산학협력단부설연구소설치및운영규정

제정일: 2022.10.18.
최근개정일:
주관부서: **산학협력단**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용인대학교 산학협력단 부설 연구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연구소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용인대학교 산학협력단 부설 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연구소 설립〕 ① 연구소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전임교원이 부설 연구소 설립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산학협력단장은 접수된 ①항의 신청서 및 본 규정에 따라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총장의 을 얻어 확정한다.

제4조〔연구소 규정내용〕 각 연구소의 내부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명칭
2. 목적
3.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4. 조직에 관한 사항
5.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6. 재정에 관한 사항
7. 해산에 관한 사항

제5조〔조직〕 ① 각 부설 연구소에는 연구소장 1인을 둔다.

② 각 부설 연구소 내 구성원은 산학협력단장의 허가하에 연구소장이 임면한다.

제6조〔자격 및 임명〕 연구소장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산학협력단장이 임명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비전임 교원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제7조〔연구소 지원〕 ① 연구소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시설 공간 및 운영비 등은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② 별도 시설 공간을 교내에서 활용하고자 할 경우 통신, 전화, 건물사용료를 학교에 지불하여야 한다.

③ 연구소의 장은 교내의 시수감면 및 보직수당 등을 적용받지 않는다.

제8조〔운영위원회〕 ① 연구소에는 연구소의 사업계획 및 연구 활동, 연구업무 등의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각 연구 기관별로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각 연구소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9조〔재정〕 ①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산학협력단 회계연도와 같다. ② 연구소의 재정은 외부기관 수탁연구에 의한 수입금, 보조금 및 기부금 등으로 한다.

제10조〔간접비 징수〕 연구소의 간접비 징수율은 본 산학협력단 고시율을 따른다.

제11조〔평가〕 ① 연구소의 설립목적의 이행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산학협력단에서 연구소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② 산학협력단에서는 필요한 경우 연구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 할 수 있다.

③ 평가 및 감사의 시기, 방법, 결과의 적용은 산학협력단장이 정한다.

제12조〔폐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를 심의를 거쳐 연구소를 폐지할 수 있다.

1. 최근 2년간 2천만원 미만의 실적일 경우
2. 연구소의 사업이 목적과 위배될 때
3. 연구소의 운영 실적이 부실하거나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4. 본교의 명예를 실추하였거나 불이익을 초래한 경우

제13조〔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산학협력단 법인정관 및 산학협력단에서 정한 제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산학협력단부설연구소 설립신청서(1)

<table>
<tr><td colspan="2">연구소명칭</td><td colspan="6"></td></tr>
<tr><td colspan="2">설치장소</td><td>소재지</td><td colspan="5">대학 호</td></tr>
<tr><td rowspan="6">연
락
처</td><td rowspan="3">연 구
책임자</td><td>성명</td><td colspan="2"></td><td>연구실</td><td colspan="2">관 호</td></tr>
<tr><td>소속</td><td colspan="5">대학 학부(학과)</td></tr>
<tr><td rowspan="2">연락처</td><td>연구실</td><td colspan="2"></td><td>휴대폰</td><td colspan="2"></td></tr>
<tr><td>이메일</td><td colspan="5"></td></tr>
<tr><td rowspan="2">연구원
1</td><td>성명</td><td colspan="2"></td><td>소속</td><td colspan="2">대학
학부(학과)</td></tr>
<tr><td>연락처</td><td>휴대폰</td><td></td><td>이메일</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2">연구원
2</td><td>성명</td><td colspan="2"></td><td>소속</td><td colspan="2">대학
학부(학과)</td></tr>
<tr><td>연락처</td><td>휴대폰</td><td></td><td>이메일</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3">연구
실적</td><td>연 구
책임자</td><td colspan="7">※ 작성방법
1. 논문인 경우 : 연도, 논문명, 등재기관
2. 연구인 경우 : 연도, 연구비지원기관, 연구비 수주금액, 연구기간
3. 작성란이 부족할 경우 양식을 조정하여 작성 가능</td></tr>
<tr><td>연구원1</td><td colspan="7"></td></tr>
<tr><td>연구원2</td><td colspan="7"></td></tr>
</table>

산학협력단부설연구소 설립신청서(2)

연구소 운영방안	연구내용	※ 작성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를 추가하여 작성
	연구계획	※ 작성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를 추가하여 작성

산학협력단 부설연구소 설립 및 운영규정에 따라 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연구책임자 신청인 (인)

용인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첨부 : 연구소 운영규정 1부.

산학협력단부설연구소 해산신청서

연구소명		연구분야 (학문분야)	
연구소장	소속		
	성명		
폐지신청 사유			

(　　)연구소는 위와 같은 사유로 연구소를 폐지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　　)연구소장　　(인)

용인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